

사망진단서 서식 출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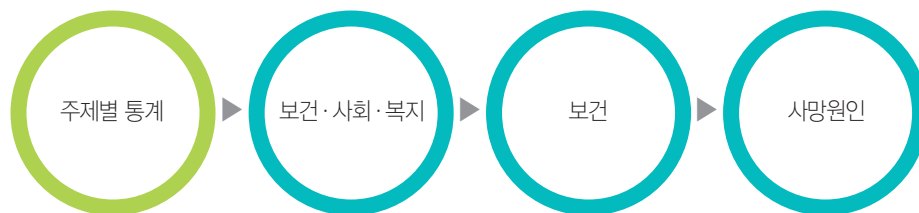
사망진단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이용 안내

사망원인통계 결과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sis.kr



마이크로데이터(MDSS) 이용 안내

사망원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ss.kostat.go.kr>)

▶ 회원 가입 후 자료 신청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사망통계를 작성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사망진단서! 왜 정확히 써야 할까요?

- 1**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의사의 **공식적인 증명**입니다.
 - ▶ 생명이나 심신(心身)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 2**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 등 **법률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사용됩니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3**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사망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용됩니다.
 - ▶ 사 망 른 : 2012년 인구 10만명당 530.8명
 - ▶ 사망원인 : 2012년 암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146.5명
 - ▶ 기대수명 : 2012년 기대수명 81.4년
 - ▶ 영아사망 : 2012년 영아사망수 1,405명
- 4** 사망진단서를 통해 작성되는 사망통계는 **건강, 안전 및 복지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 ▶ 국민의 건강수준 측정 지표
 - ▶ 의료서비스 시설, 인력 및 자원 배분의 기초자료
 - ▶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 ▶ 사망 위험 요인을 연구하는 기초자료
 - ▶ 국가간 보건복지 수준 비교

사망진단서!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1

사망원인은 의학적 인과관계 순으로 직접사인부터 위에서 아래로 **한 칸에 하나씩 기재**합니다.

- ▶ 「(가)직접사인」을 첫 번째 칸에 기입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 직접사인은 직접 사망을 일으킨 질병, 손상, 합병증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발생한 사망원인을 가장 아래칸에 기재합니다.
- ▶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단순 시간 경과 순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4칸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정보만 위에서 아래로 빈칸을 두지 않고 기재합니다.

2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만 기재하면 안됩니다.**

- ▶ 호흡정지, 심폐정지, 호흡부전, 심장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하면 안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3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기재**합니다.

- ▶ 종양의 경우 악성·양성 등 행동양식 및 원발부위 정보를 기재합니다.
- ▶ 심장질환, 폐질환 등 포괄적인 용어 보다는 심근경색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구체적인 용어로 기재합니다.
- ▶ 사인은 한글로 기재하며, 의미가 혼동되는 의학 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부적절한 기입사례 |

- 전이성 암 : 전이의 의미가 혼동되므로 원발 및 속발 구분 필요 및 발생 부위 기재 필요
- 심장질환 :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등으로 구체적 기재 필요

4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 ▶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 기입 요령 |

- 전신화상으로 치료 중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한 경우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전신화상
사망의 종류		[] 병사 [X]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사망진단서는
의사의 공식적인
증명입니다.

5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의학적으로 가장 합당한 병명을 적고 뒤에
‘(추정)’을 기입합니다.

- ▶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진료기록이나 보호자 설명을 참조하여 의사의 재량으로 사망원인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올바른 서식을 사용합니다.

-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동일한 서식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으로 진료 중에 있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작성하며,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외인사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를 들어 수사를 받아야 할 죽음)일 때 작성합니다.
- ▶ 무엇보다 **최신 법정 서식**을 사용하며
과거 서식이나 병·의원의 **자체 임의 서식**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7 기입해야 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 **그 밖의 신체사항**에는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주요 질병이나 상황을 기재합니다.
- ▶ 외인사의 경우 **외인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출처 |

「진단서 작성지침」,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이렇게 쓴다」, 이윤성, 박우성, 박석건, 서순원



사인별 사례

자살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이던 30대 남자가 4일 전 집안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90%)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입원 2일째 패혈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내원 4일째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Sample

(가)	직접 사인	패혈증성 쇼크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일
(나)	(가)의 원인	패혈증		3일
(다)	(나)의 원인	전신화상(90%)		4일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사고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 익사 [☒] 화재 [] 기타 ()		[☒] 자살 [] 타살 [] 미상	

TIP

아동 자녀가 포함된 동반자살의 경우 아동의 의도성 여부는 '타살'입니다.

사인별 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1년 2개월 전 버스에 치여 두개골 골절이 된 34세 여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다. 환자는 4일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검사 결과 폐렴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Sample

(가)	직접 사인	폐렴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4일
(나)	(가)의 원인	두개골 골절		1년 2개월
(다)	(나)의 원인	교통사고		1년 2개월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사고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 익사 [] 화재 [] 기타 ()		[] 자살 [] 타살 [] 미상	

TIP

폐렴 치료 중 사망하였으나, 폐렴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선행사인인 교통사고에 따라 사망의 종류도 외인사로 기재합니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사인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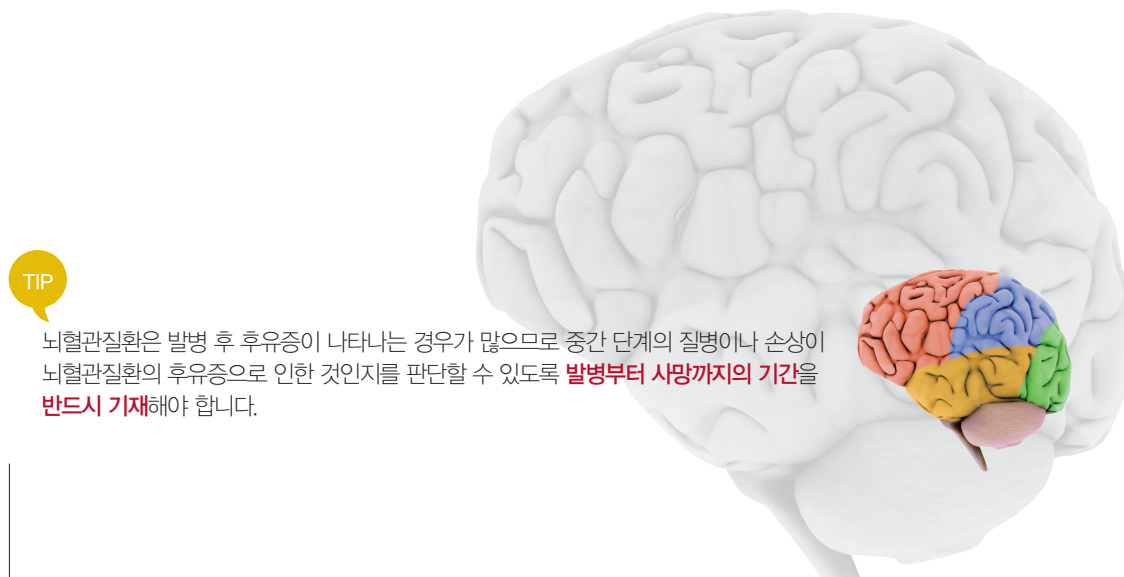
뇌혈관질환

9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5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던 72세 여자가 4일 전 객담 배출이 어려워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흡인성폐렴으로 진단되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 5일째 사망하였다.

Sample

(가)	직접 사인	흡인성 폐렴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5일
(나)	(가)의 원인	오른쪽 편마비		5년
(다)	(나)의 원인	뇌경색		5년
(라)	(다)의 원인	고혈압		9년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	------------------------------	----------------------------------



TIP

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 단계의 질병이나 손상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인별 사례

당뇨병

이틀 전 의식이 혼탁한 상태의 60세 남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검사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어 입원치료 중 2일 만에 사망하였다. 환자는 지난 10년 동안 당뇨병(Ⅱ형)을 앓고 있었고, 합병증으로 5년 전에는 신부전, 4년 전에는 이차성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중이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절제술을 받은 상태였다.

Sample

(가)	직접 사인	뇌출혈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2일
(나)	(가)의 원인	이차성고혈압		4년
(다)	(나)의 원인	신부전		5년
(라)	(다)의 원인	Ⅱ형 당뇨병		10년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1년 전 조기 위암으로 위 절제 상태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	------------------------------	----------------------------------



TIP

당뇨병은 유형(Ⅰ형 또는 Ⅱ형)과 합병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사망에 기여한 위암은 **그밖의 신체 상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인별 사례

암

40년 동안 흡연을 한 63세 남자로 약 6개월 전 기침과 호흡곤란 및 급격한 체중 감소로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았다. 이 환자는 10년 전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으나 완치된 상태이다. 입원치료 중 약 1개월 전에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가족들의 동의하에 가망 없는 퇴원을 하였다. 퇴원 3일 후 심각한 간성혼수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1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Sample

(가)	직접 사인	간성혼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사망
(나)	(가)의 원인	폐암의 간 전이		1개월
(다)	(나)의 원인	비소세포폐암		6개월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	------------------------------	----------------------------------

TIP

암은 최초 발병 부위, 전이된 부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전이성 암' 이라는 표현보다 '폐에서 전이 된 간암' 또는 '원발성 폐암', '속발성 폐암'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사인별 사례

만성B형간염

48세 남자로 2~3일 전부터 복통과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있었고, 입원 당일 다량의 피를 토하여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20년 전 B형간염을 진단 받았고, 5년 전에는 간경변을 진단받았다. 검사 결과 간경변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확인되었고, 다량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 5일만에 사망하였다.

Sample

(가)	직접 사인	식도정맥류출혈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5일
(나)	(가)의 원인	간경변		5년
(다)	(나)의 원인	만성B형간염		20년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	------------------------------	----------------------------------

TIP

식도정맥류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및 징후**는 진단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혈액감소성소크, 저산소성뇌손상, 다장기부전 등



사인별 사례

만성폐쇄성폐질환

4년 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던 72세 남자 환자가 오후 3시경 급성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폐렴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원 2일째부터는 고열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내원 5일째 새벽에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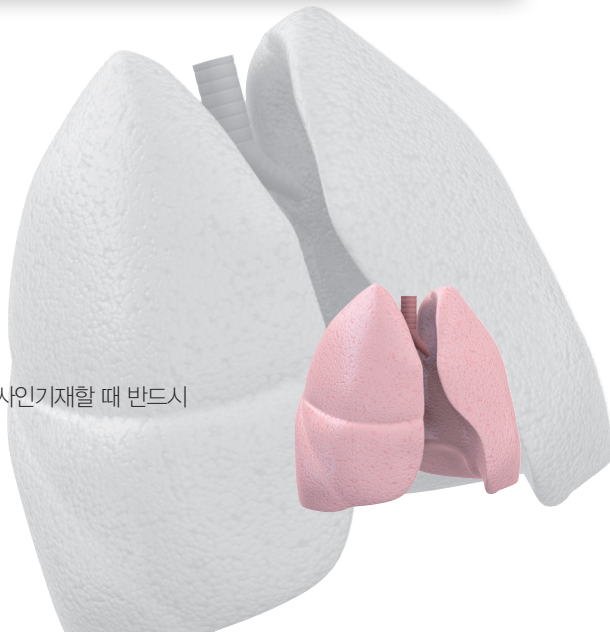
Sample

(가)	직접 사인	패혈증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4일
(나)	(가)의 원인	폐렴		5일
(다)	(나)의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		4년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TIP

COPD와 같은 약어는 진단서 상에는 사용하지 않고, 사인기재할 때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인별 사례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2개월 전 임신 34주 산모가 태아호흡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를 하여 체중 2.12kg의 미숙아(남)를 분만하였다. 출생 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진단되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한달 전부터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진행되어 치료 중이었다. 환자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사망 2일 전부터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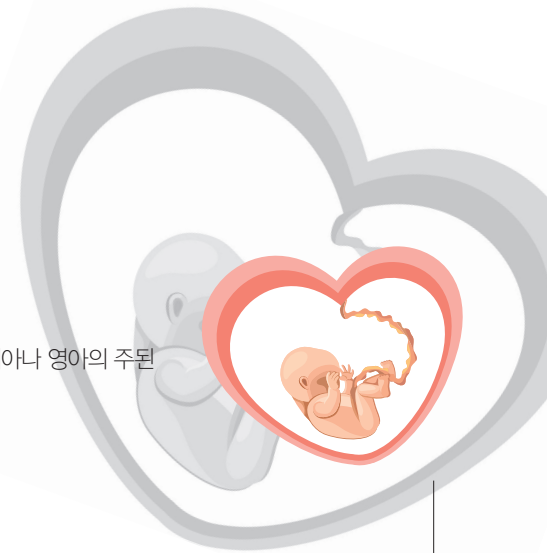
Sample

(가)	직접 사인	폐렴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2일
(나)	(가)의 원인	기관지폐이형성증		1달
(다)	(나)의 원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2달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 상황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TIP

심부전, 질식, 무산소증, 미숙아 등의 **불특정한 진단명**보다는 태어나 영아의 주된 질병이나 병태와 같은 구체적인 질병명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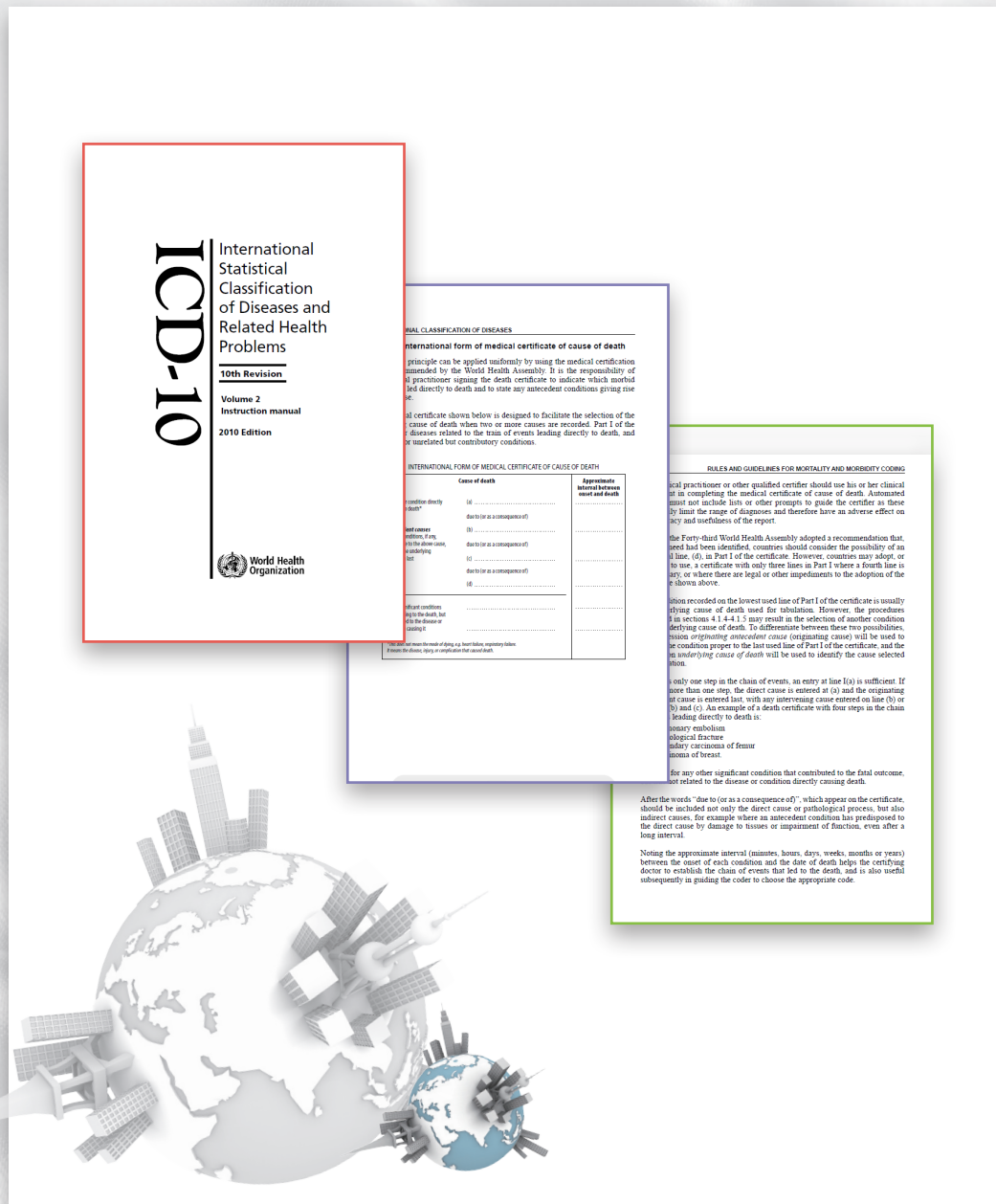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국제지침(WHO)

ICD-10 2 권 지침서, ICD-10 Volume 2 instruction manual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국제지침(WHO)

ICD-10 2 권 지침서, ICD-10 Volume 2 instruction manual



모든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적 상태를 명시하고, 그러한 원인을 야기시킨 선행병태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practitioner signing the death certificate to indicate which morbid conditions led directly to death and to state any antecedent conditions giving rise to this cause.

1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또는 **병태**는 사망진단서의 “(가), (나), (다), (라)”의 칸에 기재함.

▶ 사망원인의 관계 중 근원적인 선행사인은 가장 하단에 기재하며, 중간에 개입된 원인은 (나), (다) 줄에 기재함.

| 예시 |

(가)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나) 병적골절 (Pathological fracture)

(다) 대퇴골의 이차성 암종 (Secondary carcinoma of femur)

(라) 유방암종 (Carcinoma of breast)

2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망을 야기시킨 질병 또는 병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중요한 병태는 “**그밖의 신체 상황**”에 기재함

3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된 **질병, 손상 또는 합병증**을 기재함.

4 **심장기능상실**(심장정지), **호흡기능상실**(호흡부전)과 같은 사망유형을 기재하지 않음.

사망통계 이렇게 작성합니다.



사망통계 지표 이렇게 산출합니다.

조사망률 : 당해연도 인구당 총 사망자수

$$\text{조사망률} = \text{당해연도 사망자수} / \text{당해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 사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text{연령표준화사망률} = \sum (\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 / \text{표준인구}$$

기대수명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② 성 별	[] 남 [] 여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 업	
⑥ 등록 기준지					
⑦ 주 소					
⑧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⑨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⑩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교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정·농발,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 기타()			
⑪ 사망의 원인 ※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인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 고 종 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의도성 여부	☐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사고발 생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사고발 생장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교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정·농발, 축사, 양식장 등 ☐ 기타()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